

신용정보 집중 및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8. 1.10

개정 2019.11. 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용정보집중 및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규정 제2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규정 제2조제1항 1호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 1호에 따른 여권번호 및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번호 등. 이하 같다),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2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규정 제2조제1항 2호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규정 제2조제1항 3호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련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4. 규정 제2조제1항 4호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채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5. 그 밖에 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및 경매 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 다. 기업집중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 마. 그 밖에 신용정보법에서 정하는 정보

제2장 신용정보의 수집·조사와 처리

제3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등) ① 규정 제6조에 따라 신용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한 자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자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위탁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가 연 1회이상(위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1회 이상을 말한다) 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및 결과를 공사에 보고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 보안 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 및 [별표1]의 “3.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에 따른 보안조치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 봉합

제3장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제4조(신용정보의 관리원칙) ① 규정 제7조제2항의 “세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라 함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및 동 세칙을 말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집중한 신용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어음 및 수표의 최종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조 3호의 신용정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해서는 안된다.

1. 집중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2.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④ 규정 제7조제3항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2조 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2. 제2조 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3. 제2조 5호 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면책·복권 결정 및 회생·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⑤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집중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

정보집중기관의 집중·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1. 제4항 1호의 신용정보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
 2. 제4항 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3. 제4항 3호의 신용정보는 집중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 ⑥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집중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5항 1호 및 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집중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4장 신용정보 집중

제5조(신용정보 집중) ①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정정·해제·삭제할 때에는 공사 신용정보집중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집중시스템을 이용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집중대상 신용정보를 수기로 작성하여 한국신용정보원 통합업무시스템에 직접 집중할 수 있다.

③ 신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부서장은 신상품 출시 이전에 신용정보 집중에 필요한 전산개발 등 조치계획을 수립 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 8>

제1절 식별정보

제6조(식별정보) ① 식별정보란 제2조 1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소관부서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변경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신용정보제공대상 기업체의 신규발생,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신규발생 또는 변경정보를 집중하여야 한다.

제2절 신용거래정보

제7조(신용거래정보) 신용거래정보란 제2조 2호의 정보를 말하며, 해당 신용정보의 집중사유, 집중시기, 해제사유 등은 [별표 2]신용정보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8조(신용공여의 집중) ① 공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및 해지 (일부해지 포함) 시 채무자별 보증 총 잔액을 집중한다. 다만, 개인(자연인) 채무자의 보증내역은 집중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증취급시 보증채무약정서의 기업 및 경영실권자 등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연대보증정보를 함께 집중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보증취급 시 담보규정에 의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재평가한 경우에는 담보유효가액(담보평가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제외하여 담보권실행시 실제회수 가능한 담보금액을 말한다)을 집중한다.

제9조(신용회복시 신용거래정보 관리기준) ①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기집중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정보가 해제된 경우, 소관부서는 해제된 정보 중 파산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다시 집중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신용거래정보가 파산면책결정을 사유로 해제된 후 파산면책결정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 파산면책결정을 사유로 해제된 신용거래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다시 집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중금액 및 집중사유 발생일은 파산면책결정을 사유로 해제된 그 정보의 집중금액 및 집중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3절 신용도판단정보

제10조(신용도판단정보) ① 신용도판단정보란 제2조 3호의 정보를 말하며, 해당 신용정보의 집중사유, 집중시기, 해제사유 등은 [별표 2]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해당 정보의 관련인정보를 포함하여 이하 “연체정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한다.

1.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의 집중사유발생일은 연체기산일로부터 [별표 2]신용정보관리기준의 집중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집중사유발생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집중사유발생일로 한다.
2. 제1호의 연체기산일은 원금(분할상환금을 포함한다)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 하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상환에 의해 차기납입일이 변경된 경우 차기납입일의 다음 날로 한다.
3. 연체정보의 집중금액은 집중사유가 발생한 날의 잔여 대출원금으로 하며, 연체금액은 실제 연체가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의2(신용도판단정보의 집중특례) ① 관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인정보를 집중하지 않는다.

1.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 기관에 대한 출자법인 등
2. 자본금의 30%이상을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음 및 수표의 최종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도판단정보를 집중하지 않는다.

1. 집중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2. 채권 관련 정보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③ 신용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정보등을 집중하지 않는다.

1. 종전 업권별 규약상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

업 대상기업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대상기업
 3. 신용위험평가협의회 협약」 대상기업
 4.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해당기업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
 6.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운영협약」에 의한 기업
 7.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용을 받은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 기업
- ④ 연체정보등의 집중사유 발생 전에 보전처분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다.

제11조(확정채권의 집중) ① 「용자규정」에 의한 용자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신용도판단정보로 집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체금액을 집중할 때에는 원금의 잔액 및 연체금액을 집중하고, 이자연체금액은 집중하지 않는다.

③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상채권 발생 시에는 채무자별 구상채권 잔액을 신용거래정보로 집중하고, 3개월 경과시 신용도판단정보로 집중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도판단정보 집중 시 [별표3] 보증상품 구분기준에 따른 금융성 보증은 대위변제 발생 시 해당금액을 즉시 신용도판단정보로 집중한다.

⑤ 구상채권의 상각 시에는 청구할 수 있는 상각채권 원금을 집중하며, 채권포기, 소멸시효 완성, 기업의 파산, 청산종결, 면책 등 청구할 수 없게 된 채권은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용정보 집중을 하지 아니한다.

1. 부분상각 등으로 기존에 특수채권 집중 처리 방법에 따라 집중이 되어있는 경우

2. 대위변제·대지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어 해제된 경우
3. 대위변제·대지급일로부터 8년이 경과되어 삭제된 경우

제12조(분할상환약정 채무자의 집중 등) ① 분할상환약정 채무자 및 채무관계자가 [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집중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한다. 이 경우 해제 사유 발생일은 약정 초입금을 납입한 날로 한다.

② 제1호의 해당하는 자가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재집중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 전 당초 사유발생일을 사유발생일로,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발생일의 구상채권 원금을 집중금액으로, 재집중일의 구상채권 원금을 잔액으로 집중한다.

제13조(신용회복시 신용도판단정보 관리기준) ① 신용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연체정보등은 한국신용정보원이 해제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연체정보등을 해제하는 경우 부도정보 및 관련인정보는 제외한다.

1.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파산면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2.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3.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확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해제된 정보 중 변제계획인가결정, 파산면책결정, 신용회복지원 확정 또는 채무조정확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련된 정보를 다시 집중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연체정보등이 해제된 후 해당 해제사유가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해제사유로 해제된 연체정보등을 다시 집중한다. 이 경우 연체금액, 집중금액 및 집중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면책결정이 있는 경우”로 연체정보등이 해제된 후 신용회복지원 확정,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파산면책결정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 : 연체금액은 법령 등에 따라 변제충당 후 남은 나머지 원금을, 집중금액 및 집중사유 발생일은 해제된 그 정보의 집중금액 및 집중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2.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이 있는 경우”, “채무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연체정보등이 해제된 후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채무의 상환을 유예한 결정 등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 : 연체금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민법 등에 따라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을, 집중금액 및 집중사유 발생일은 해제 전의 채권이 유효한 경우 그 채권의 집중금액 및 집중사유가 발생한 날, 해제 전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새로 발생한 채권의 집중금액 및 집중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④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채무자가 연체한 경우 집중금액, 연체금액, 집중사유 발생일 등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신용회복지원자의 집중 등)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한 경우 신용회복지원 확정 전 당초 사유 발생일을 사유발생일로, 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일의 구상채권 원금을 집중금액으로, 재집중일의 구상채권 원금을 연체금액으로 재집중한다.

②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또 다른 사유로 신용도판단정보를 재집중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을 기준으로 집중하고, 그 해당 건이 신용회복지원대상이 되면 추가 채무조정확정일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해제한다.

제4절 공공정보

제15조(공공정보) 공공정보란 제2조 5호의 정보를 말하며, 해당 신용정보의 집중사유, 집중시기, 해제사유 등 세부사항은 [별표 2]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6조(관련인 집중 등) ①법인이 연체 등 사유로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하는 때에는 그 관련인에 해당하는 자가 공사의 채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관련인 정보를 집중한다.

② 법인의 관련인으로 집중한 때에는 법인이 해제되어야만 관련인 정보를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내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법인의 관련인으로 집중된 자가 형식적 주주임을 이유로 관련인 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삭제 할 수 있다.

1. 이사회 의사록과 기재결의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증거가 있는 경우
2. 주주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단, 추후 확정판결에 따라 재집중 여부를 결정한다.
3. 요청인이 해당회사에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소관 부서장이 판단한 경우

④ 법인의 관련인으로 집중된 자가 집중사유발생일 이전에 소유지분을 이전한 사실 또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유로 관련인 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삭제할 수 있다.

1. 주식매매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공증일자 및 주식대금 정산일자가 모두 관련 법인의 집중사유발생일보다 빠른 경우에만 한정한다.)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4. 법원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판결문 또는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문 사본
 5.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해제문서” 또는 “제2차 납세 의무자 조회확인서” 사본 등
- ⑤ 집중사유발생일 이전에 소유지분을 이전한 것을 사유로 관련인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새로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관련인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및 관련인 집중) 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체 및 관련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있는 때에는 공사의 대위변제·대지급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보전처분명령 결정일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공공정보를 집중한다.

② 재산보전처분명령 이후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대위변제·대지급정보와 공공정보를 모두 집중한다.

③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난 경우에는 인가결정일을 사유발생일로하여 기 집중된 대위변제·대지급정보를 해제한다.

④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대위변제·대지급정보를 집중하지 않고 공공정보를 집중한다.

⑤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전액을 조기 상환한 경우에는 공공정보를 해제한다.

⑥ 회생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3회 이상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관련인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재집중) 회생절차 변제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로 신용도판단정보를 재집중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진행 전 당초 사유발생일을 사유발생일로, 회생절차 폐지일의 구상채권 원금을 집중금액으로, 재집중일의 구상채권 원금을 연체금액으로 재집중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분담금) 공사는 일반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용정보운용분담금을 부담한다.

부 칙<2018. 1.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사규의 개정) 사규관리규정의 [별표]사규분류표에 다음의 사항을 신설한다.

편별	분류	사규번호	사 규 명	소관부서
제9편	영업	9-11	신용정보집중 및 관리규정 시행세칙	심사평가처

부 칙<2019.11. 8>

이 세칙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3조제3항 관련)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1. 접근통제

- 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 ②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기록하여 최소 3년간 보관한다.
- ④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 ⑤ 개인신용정보주체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집중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⑥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 ⑦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한다.
- ⑧ 외부사용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은 업무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권한 부여에 관한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 ①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1년 이상 저장하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 ①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사유·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하며,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③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④ 주민집중번호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2.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3. 내부망에 주민집중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 나. 그 밖의 신용정보회사등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4.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⑤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처리기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바이러스 정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한다.

5.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에는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에는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별표 2] (제7조, 제10조, 제15조 관련)

신 용 정 보 관 리 기 준

1. 식별정보

구 분		등록 정보
식별 정보	개 인	-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우선함
		- 성 명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업 종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업 종

2. 신용거래정보

1) 개인채무보증정보

구 분	집중 대상자	집중사유	집중 코드	해제사유	해제 코드	집중시기	비 고
개인채무 보증정보	개인 (보증인)	채무보증사실	0033	보증채무가 소멸하거나 파산면책 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사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보전처분등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0034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경영실권자 등의 연대입보 사항

2)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 대상자	구 분		집중사유	집중시기	비 고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신용공여 현황 (일일여신)	평일여신(한도성 신용공여현황 포함)	매 영업일(매월 마지막 영업일은 제외한다) 기준 신용공여(한도성 포함) 보유	집중사유가 발생한 날(이하 기업신용공여정보에 한하여 “기준일”로 한다)로부터 2영업일 이내(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정정가능)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규약 <별지 제4호 서식> 「신용공여조사표」 조사표1, 조사표2, 조사표3, 조사표4에 따름

집중 대상자	구 분		집중사유	집중시기	비 고
		말일여신(한도성 신용공여현황 포함)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신용공여(한도성 포함) 보유	기준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정정가능)	
	신용공여 현황 (월말여신)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현황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 보유	기준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정정가능)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규약 <별지 제4호 서식> 「신용공여조사표」 조사표 5에 따름
		법인의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신용공여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약정 보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규약 <별지 제4호 서식> 「신용공여조사표」 조사표 6에 따름

3. 신용도판단정보

1) 연체정보

구 분	대출금(융자금) 연체
집중사유 (집중코드)	- 대출(융자)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0101) -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특수채권 제외)으로서 해당 기간 경과시 집중
집중시기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해제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채무자변제”라 한다)(01) 가. 채무자(관련인을 포함한다)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기일경과어음미결제정보, 무보증회사채 상환불이행정보, 무담보미수채권정보는 제외한다) 나.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경우(관련인정보에 한한다) - 보증인(관련인을 제외한다)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이하 “보증인변제”라 한다)(02) - 채권을 법적절차 등에 의해 회수한 경우(이하 “강제회수”라 한다)(03) - 채권을 감면, 면제, 포기한 경우(이하 “손실처리”라 한다)(04) -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이 있는 경우(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06) - 채무자변제 및 손실처리(07) - 보증인변제 및 손실처리(08) - 강제회수 및 손실처리(09)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인 경우(신용회복지원 확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10) - 신용회복지원(한마음금융)이 있는 경우(신용회복지원(한마음금융)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1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2) 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 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3) - 파산면책결정이 있는 경우(파산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14) - 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청산(15) - 채권을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16) -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17)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99) 가. 기타 채무가 소멸되거나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보전처분등으로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채무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 다. 집중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보존기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존 1. 집중금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존 가. 집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된 경우 보존기간 없음 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2. 집중금액 1천만원 이하인 정보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없음. 다만, 해제사유 제18호다목에 따라 해제된 경우 1년

2) 대위변제 · 대지급 정보

구 분	지급보증대지급, 대위변제	
	집중사유	집중코드
	1.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보증보험사의 이행성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특수채권 제외)으로서 해당 기간 경과 시 집중	0201
	2. 금융성 보증의 대위변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금융성(신용)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특수채권 제외)으로서 사유발생 시 집중	0202
집중시기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해제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채무자변제”라 한다)(01) 가. 채무자(관련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 등을 정리한 경우 나.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경우(관련인정보에 한한다) 다. 해당 소구·구상불능 채무를 정리한 때(소구·구상불능 정보에 한한다) 라. 해당 채무액을 완납한 때(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 정보에 한한다) 2. 보증인(관련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 등을 정리한 경우(이하 “보증인변제”라 한다)(02) 3. 금융기관이 채권을 법적절차 등에 의해 회수한 경우(이하 “강제회수”라 한다)(03) 4. 금융기관이 채권을 감면, 면제, 포기한 경우(이하 “손실처리”라 한다)(04) 5.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이 있는 경우(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06) 6. 채무자변제 및 손실처리(07) 7. 보증인변제 및 손실처리(08) 8. 강제회수 및 손실처리(09) 9.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있는 경우(신용회복지원 확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10) 10. 신용회복지원(한마음금융)이 있는 경우(신용회복지원(한마음금융)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2) 가. 희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희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 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 1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3) 13. 파산면책결정이 있는 경우(파산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에 관련된 정보에 한한다)(14)	

	14. 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청산(15) 15. 채권을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16) 16.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17)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99) 가. 기타 채무가 소멸되거나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보전처분등으로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채무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 다. 집중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보존기간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존 1. 집중금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존 가. 집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된 경우 보존기간 없음 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2. 집중금액 1천만원 이하인 정보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없음. 다만, 해제사유 제18호다목에 따라 해제된 경우 1년

3) 금융질서문란정보

구 분	집중사유	집중 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보존 기간	집중시기
식별정보대여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자의 개인식별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09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집중사유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이 그 손해가 전부 배상 또는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제를 요청한 경우(99)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위변조·허위자료제출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0961	2. 집중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99)		
회생파산사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0966			

4) 관련인정보

구분	집중사유	집중 코드	해제사유 (해제코드)	보존기간	비 고
관련인	신용정보주체가 관리규약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어음·수표·부도사실(0404)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이하 “피관련	- 각 집중코드 앞에 “9” 표시 - 특수채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피관련인의 해당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된 경우(피관련인의 해제코드를 따름)	기록을 보존하지 않음, 다만, 피관련인이 7년 기간이 경과하여 해제된 경우 피관련인의 보존기간을 따름	- 과점주주 및 최다출자자의 경우 집중여부의 판단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집중

	인"이라 한다)의 관련인	인은 각 집 중 코 드 앞 표 시	2. 관련인이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 리한 경우(01)		- 집중사유가 발생 한 이후 지분율이 변동되어 과점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아니게 되어도 집 중유지
--	---------------	-----------------------------	---	--	---

4. 공공정보

구분	집중사유	집중 코드	해제사유	해제 코드	비 고
신용 회복 지원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자(「채무자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 전처분명령이 있는 때를 집중사유발생일로 본다)	10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2. 회생조건 이행이 완료된 경우(법원의 보고 의무 면제를 포함한다) 3. 집중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77	금 융 기 관 이 집중
신용 회복 지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자(변제 계획인가결정일을 집중사 유발생일로 본다)	13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1의2.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집중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법원에서 통 보하여 집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전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중지·금지명 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 령을 받은 자(위 처분 등이 채권자에게 송달 된 날을 집중사유발생 일로 본다) 나. 보전처분, 중지·금지명 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 령 없이 개인회생절차 의 개시결정을 받은 자 (개시결정일을 집중사 유발생일로 본다)	1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집중사유 중 가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에 신청자가 개시신청을 취하한 경우 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에서 기각 된 경우 다.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 지명령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해 해당 처분 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제 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집중사유 중 나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인가여부가 결 정된 경우 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다.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 정을 받은 경우 3. 집중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사건번 호와 그 사건 번호를 부여 한 법원의 정 보를 함께 집 중하며, 처분 의 변경 등으 로 인해 사건 번호 및 법원 정보 변경 시 해당 정보 정 정

[별표3] (제11조 관련)

신용도판단정보 집중 시 보증상품 구분기준

□ 금융성 보증 및 이행성 보증 구분기준

- 이행성 보증 : 채무자가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
- 금융성 보증 : 보증인이 피보증인인 채무자가 채권, 대출 및 기타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금융성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시 이를 대신 변제하는 형태의 보증

□ 보증상품 분류표

보증상품명	종 류	상품설명	구 분
주택분양보증	기업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주택임대보증	기업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주상복합주택 분 양 보 증	기업보증	건축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오피스텔 분 양 보 증	기업보증	건축주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 외의 시설 포함)의 분양이행(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포함)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하자보수보증	기업보증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인 허가 보증	기업보증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설치 등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감리비에 치 보증	기업보증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조합주택시 공 보증	기업보증	주택 또는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조합의 손해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임대보증 금 보증	기업보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권자(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하도급대 금 지급 보증	기업보증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건설위탁)의 경우에 시공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임대관리보증	기업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지급(임대관리임대료보증) 및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을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보증상품명	종 류	상품설명	구 분
전세임대주택 전 세 보 증 금 반 환 보 증	개인보증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전세(임차)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전 세 보 증 금 반 환 보 증	개인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임 차 료 지 급 보 증	개인보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의 지급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이행성 보증
주택사업금융 (P F) 보 증	기업보증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금융성 보증
기금건설자금 대 출 보 증	기업보증	(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금융성 보증
모 기 지 보 증	기업보증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금융성 보증
후 분 양 대 출 보 증	기업보증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금융성 보증
정비사업자금 대 출 보 증	개인보증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금융성 보증
리모델링자금 보 증	개인보증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금융성 보증
주택구입자금 보 증	개인보증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금융성 보증
주택임차자금 보 증	개인보증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주택임차자금의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금융성 보증
기금전세자금 대 출 보 증	개인보증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금융성 보증
전 세 금 안 심 대 출 보 증	개인보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책임(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책임(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부담하는 보증	금융성 보증
임 대 주 택 매 입 자 금 보 증	개인보증	임대사업자(기업형주택임대사업자 포함)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금융성 보증
임 대 리 츠 P F 보 증	기업보증	기업형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의 건설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보증 상품 * 대출금융기관에 보증신청인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금융성 보증
리 츠 회 사 채 보 증	기업보증	母子츠가 주리츠 출자 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 할 수 있도록,母子츠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	금융성 보증

[별지서식 제1호] (제12조제1항 관련)

신용도판단정보집중 해제요청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1. 본인은 귀 공사와의 20 년 월 일자 체결한 채무분할상환약정에 기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과 아래 관련인에 대한 신용도판단정보 집중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본인은 귀 공사와의 채무분할상환약정이 상환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분할상환약정 당시 실익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로 재집중되더라도 본인 및 관련인 모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_____ (인) (☎ _____)
주 소 _____

관 련 인 _____ (인) (☎ _____)
주 소 _____

관 련 인 _____ (인) (☎ _____)
주 소 _____